

<별첨-1>

창업여부 자가 진단

사 례		창업여부	자가진단 (O표시)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조직병경 형태변경 위장창업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 설립된 경우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법인전환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사업승계 법인전환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창 업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폐업 후 재창업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지 않고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창 업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사업승계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한 경우	사업확장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으로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업종추가	
A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않고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창 업	
A개인이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했지만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경우		사업승계	

<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신규사업장 정의(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별첨-2>

제출서류(합격시 제출)

○ 대표자

구분	예비창업자		창업자				예비재창업자		비고
	1인 단독	팀 대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인 단독	팀 대표	
			1인 단독	공동 대표	1인 단독	공동 대표			
신분증	계약서 작성 시 확인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		●		●		●		●	자율양식
팀창업 계약서		●						●	자율양식
주민등록초본	●	●	●	●	●	●	●	●	민원2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	●	●	●	●	●	●	●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국세완납증명)	●	●	●	●	●	●	●	●	홈택스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	●	●	●	
사업자등록증명 (보유중인 사업자)			●	●	●	●			
폐업사실증명							●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실적보유시)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원보유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국민건강 보험공단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			

○ 직원 또는 팀원(입주대상자)

- 신분증 앞, 뒤 복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안내

- 기준일: 2022년 08월 01일(모든 증명서는 기준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지원자(대표자 또는 팀리더)
 - 팀원(1인 이상), 공동창업자(1인 이상)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창업자: 현재 사업자등록(계속 사업자)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
 - 창업자가 보유한 단일 사업자등록과 다른 아이템으로 지원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거나 새롭게 발급받아 지원 가능
 - 창업자가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여 지원 사업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붙임 참조)
- 예비재창업자: 과거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는 지원자
- 재창업자: 과거 폐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없을 시 운전면허증 및 여권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국세완납증명(개인, 법인): 국세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지방세 납세증명(개인, 법인):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모집마감일 전에 완납하고 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지원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일 경우 지원 불가
- 공동(동업)창업의 경우에도 신청자와 동일하게 해당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
- 팀창업의 경우 팀원과 관련된 서류 제출

<별첨-4>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 공간(시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센터로 사업자 주소지(본점)를 이전할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입주 신청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기타 종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